

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

-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하고(조사대상 기간 : 입찰공고일 6개월 전 ~ 조사일, 자본금은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또는 재무상태진단일)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,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, 무등록자 (재)하도급 금지 위반, 직접시공 위반 등 **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, 해당 입찰에서 배제**될 수 있습니다.
 - ※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같음하고 낙찰 예정 상위업체(1~0순위 등)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
 - ※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우리 시 건설과(☎031-8082-675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, 시방서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, 「공사계약 특수조건」,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 **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**
-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, 현장설명서,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**본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공고문이 우선 적용**됩니다.
-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,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(또는 적용례)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- 자료검색 방법 -

1. 법령·계약예규 등 :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(<http://www.law.go.kr>) →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
2. 조달청 고시·지침 등 : 조달청 홈페이지(<http://pps.go.kr>) → 정보제공 → 법령정보(고시, 공고 및 지침 안내 등) 또는 업무별 자료(시설공사)에서 검색
3.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.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

- 가. 공 사 명 : **공립 디아뜰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**
- 나. 공사현장 : 양주시 회정동 857(회천중앙역 대광3차 로제비앙 공동주택 내)
- 다. 공사유형/공사구분 : 유지보수공사/전문공사
- 라.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29일

마. 공사규모 : 어린이집 내·외부 리모델링 공사(연면적 293.6㎡)

※ 세부내역 : 첨부된 내역서 참조

마. 공사 예정금액

(단위 : 원)

총 공사 예정금액 (추정금액)	도 급 금 액			관급자재대	
	계 (기초금액)	추정가격	부가가치세	도급자관급	관급자관급
92,353,000 (92,353,000)	92,353,000	83,957,273	8,395,727	-	-

※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,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.

2. 견적제출(투찰) 및 개찰

가. 전자견적서 제출기간: 2026. 9. 22. 10:00 ~ 2026. 9. 29. 10:00

나. 개찰일시 및 장소: 2026. 9. 29. 11: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

※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.

다. **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**하며, **재입찰은 개찰일 15:00까지 투찰**하시고, 15: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.

3. 견적 및 계약방식

가. **총액입찰, 수의계약(지역제한), 총액계약, 확정계약, 단독계약**입니다.

나. **지역(경기도 양주시)**으로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**제한**하는 공사입니다.

다.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.

- 설계서 열람장소: 양주시 미래교육과(☎031-8082-5821)

라. 본 공사는 **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**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

마. 본 공사는 **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**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,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4. 견적제출 참가자격

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이하 지방계약법)」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,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의한 **전문건설업(실내건축공사업)**을 등록한 자로 **경기도 양주시**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

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)를 둔 **업체[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]**여야 합니다.

나.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.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[※입찰 마감일 전일이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.]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www.g2b.go.kr>)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.

다. 「지방계약법」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'조세포탈 등을 한 자'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

※ 입찰 참가자격(업종, 명칭, 상호, 사업자의 대표자, 소재지 등)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,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)까지 유지하여야 하며,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.

※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,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「지방계약법」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.

5.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: 허용 안함

6.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

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.

7.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

가. **적격심사 비대상 공사**입니다.

나. **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(원) : 2,085,625원**

국민건강 보험료	국민연금 보험료	노인장기 요양보험료	산업안전 보건관리비	안전관리비	퇴직공제부금비	품질관리비
-	-	-	2,085,625	-	-	-

※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에 따라 입찰자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,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(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의 합산액)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예정가격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」에 따라 **기초금액의 ±3%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**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.

※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천한 예비가격 추천결과에 따라 결정되며,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천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천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- 라.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**예정가격 이하로써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」 ‘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’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.745%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」 ‘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’ 별표 1의 ‘수의계약 배제사유’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.**
- 마.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- 바.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.

8. 견적제출의 무효

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의 ‘제8장 입찰유의서’ 제2절 제12항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됩니다.

9.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

가.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. (단위 : 원)

국민건강 보험료	국민연금 보험료	노인장기 요양보험료	산업안전 보건관리비	안전관리비	퇴직공제부금비	품질관리비
-	-	-	2,085,625	-	-	-

- 나. 견적제출 참가자는 **견적제출 금액(산출내역서 포함)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‘가’항의 비용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**하여야 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건설기술진흥법」 등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**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**하여야 합니다. (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)
- 다. 품질관리비, 환경보전비,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,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라. 석면분담금,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(설계)에 반영하여야 합니다.
- 마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.

10.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

- 가.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「지방계약법」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4조제1항 또는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「지방계약법」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'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.'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나. '가'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'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'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다.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,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'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'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

11. 하도급 관련사항

- 가.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,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(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 등)에 따릅니다.
- 나.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다. 「지방계약법」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,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,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, 하도급 대금지급 규정 위반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라. 「지방계약법」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2. 「하도급지킴이」 [전자대금지급시스템] 이용에 관한 사항

- 가. **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**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4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 및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 「**하도급지킴이**」를 **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, 수령하여야 하며**, 하도급지킴이 공사대금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나 **노무비는 인출제한을 적용**합니다. 또한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, 건설근로자, 건설기계대여업자,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를(선금, 노무비, 기성금, 준공금 등) 청구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연동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, 모든 대가의 청구계좌는 고정계좌를 사용합니다.

- 나.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「하도급지킴이」 이용 약약서」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
- 다. 낙찰을 받은 자는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(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)합니다. 또한 하도급자(장비·자재업체 포함)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「하도급지킴이」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
13.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

- 가.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(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)하여야 합니다.
- 나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(현장별 보증서)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·건설업자·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※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, 건설기계등록증(차량등록증), 통장사본,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

14.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

- 가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.
- ※ **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(법 제4조, 제9조)**
- *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*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*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 - *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- 나. 계약상대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※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적용대상 공사 : 공사금액 50억 이상
- ※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적용대상 공사 : 제한없음
- 다.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.
- 라. 위 '나'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
- 마. 계약상대자가 위의 '가','나','다'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바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다만,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제출해야 합니다.

15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(지역번호 없이 1588-0800)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, **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** 있습니다.
- 다.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**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** 또는 **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**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**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라.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(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)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)
- 마.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, 대금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1.5%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바. 양주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“**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[양주시 고시 제2015-193호, 2015.10.27.]**”을 시행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4조(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) 자재구매시 양주시 업체 우선 구매
 - 제5조(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 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60% 이상을 양주시민 (입찰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) 중에서 우선 고용(착공시“고용계획서”, 준공시 “고용확인서” 제출)
 - 제6조(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) 건설기계 사용시 양주시 등록 건설기계 우선사용
 - 제7조(공사일부 하도급) 관내업체와 우선하여 하도급계약 체결
- 사.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『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보호 등에 관한 조례』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아.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 제10조에 따라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건설기술진흥법」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.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자. 본 공사(계약)는 **채권양도 금지 특약** 등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.

차.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문의

- 입찰공고 관련 : 양주시 회계과(☎031-8082-5413)
- 공사관련 설계서, 시방서 등 사업내용 : 양주시 미래교육과(☎031-8082-5821)

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시 회계과(☎031-8082-5413)로, 부패행위,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(☎ 031-8082-5120~3) 및 홈페이지(www.yangju.go.kr)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6년 9월 21일

양 주 시 (분 임) 재 무 관